



< 수시 공시 >

2012.11.12.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3 조(수시공시의 방법 등)제 3 항 제 5 호에 의거, 당 사에서 운용 중인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이며,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 조(투자신탁의 해지)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음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- 다 음 -

1. 해당 집합투자기구 및 내역

구분	집합투자기구 명칭	발생일 설정잔액(원)	발생일 순자산총액(원)	기준가격
1	신영플러스안정형증권투자회사2호(채권혼합)	3,077,792,633	3,120,967,743	1014.03
2	신영라이프파트너증권자투자신탁(주식혼합)A형	1,326,866,076	1,211,105,041	912.76
3	신영라이프파트너증권자투자신탁(주식혼합)C1형	30,475,712	27,515,773	902.88
4	신영라이프파트너증권자투자신탁(주식혼합)Ce형	18,077,033	16,492,446	912.34
5	신영업종우량주30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4,831,146,862	4,840,435,487	1001.92

2. 공시 사유 : 소규모펀드(1개월) 여부 공시

3. 발생 일자 : 2012.11.09. ~ 2012.11.11.

4. 자세한 내용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(<http://www.kofia.or.kr>), 집합투자업자 (<http://www.syfund.co.kr>) 홈페이지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